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정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3. 17.

김상훈의원 등 15인

나. 회부일자 : 2025. 3. 1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28회 국회(임시회)

- 제2차 정무위원회 (2025. 8. 26.)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 제433회 국회(임시회)

-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6. 3. 31.)

상정

-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6. 4. 2.)

상정 · 축조심사

○ 제435회 국회(임시회)

-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6. 5. 12.)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 제1차 정무위원회 (2026. 5. 14.)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김상훈의원)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의 등록 및 그 임원의 자격, 보험대리점의 업무정지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최근 보험업의 제판분리가 가속화되면서 보험회사는 상품제조와 자산운용만 담당하고, 상품판매는 보험대리점이 담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보험회사가 자회사형의 보험대리점을 두어 보험대리점에서 적극적으로 보험설계사를 유치하면서 법인인 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이 증가하고 대형화하는 추세에 있음. 이러한 법인보험대리점의 증가세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상품을 비교·제공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외적 성장세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제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제재로 인하여 선량한 보험설계사가 받게 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대리점을 포함하여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으로 확대함(안 제84조).

나.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결격사유를 금융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으로 확대하고, 결격사유 기간이 그 위반에 대한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서 5년 이내인 경우로 확대함(안 제87조의2).

다. 보험대리점에 대한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9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곽 현 준)

1. 보험모집종사자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에 금융관계법령 위반 포함

□ 개정안은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보험설계사등”이라 함)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에 보험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함) 위반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84조).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0.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20. (현행과 같음) 21. “ <u>금융관계법령</u> ”이란 보험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을 말한다.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1.·2. (생략) 3. 이 법 또는 「 <u>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u> 」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3. <u>금융관계법령</u> 에----- ----- ----- -----

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6. (생략) 7.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 10. (생략) ③ (생략)	----- 4. 금융관계법령에----- ----- ----- 5. 6. (현행과 같음) 7. 금융관계법령에----- ----- ----- ----- ----- ----- ----- ----- 8. ~ 1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

□ 현행 「보험업법」 제84조제2항1)은 보험설계자의 결격사유를 규

- 1)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①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이 절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

정하고 있음. 이 중 제3호, 제4호 및 제7호에서는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함)에 따라 형벌을 받거나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표 1] 보험설계사 결격사유(「보험업법」 제84조제2항)

구분	결격사유
제1호·제2호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미복권
제3호·제4호·제7호	·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면제로부터 2년 미경과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자 ③ 과태료·과징금 미납부 또는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해당 처분 후 2년 미경과
제5호·제6호	· 보험설계사 등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미경과 (단, 2회 이상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 미경과)
제8호·제9호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인 등의 임원이나 관리인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10호	· 보험료, 보험금 등을 다른 용도에 유용하고 3년 미경과

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보험설계사의 구분·등록요건·영업기준 및 영업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경우에도 그 결격사유 중 하나로 보험설계사의 결격사유(제8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명시²⁾하고 있으며, 보험설계사등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이후에 이와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함³⁾.

□ 개정안은 「보험업법」 제2조에 금융관계법령을 ‘보험업법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으로 정의하고, 보험설계사등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형벌 또는 제재조치의 근거 법률을 기존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융관계법령’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참고로, 2003년 「보험업법」 전부개정 당시에는 제84조제2항에서 형벌 또는 제재조치를 받아 결격사유 등의 대상이 되는 근거 법률을 ‘이 법(「보험업법」)’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난 2020년 보험설계사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금

2) 「보험업법」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한다.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89조(보험중개사의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한다.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일시적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용소비자보호법」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도 포함하였음.

□ 현행 「보험업법」 체계 하에서는 보험사기행위 등을 행한 자가 신규로 보험설계사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기존에 보험설계사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업무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행위⁴⁾로 보험사기죄⁵⁾의 유죄확정을 받은 보험설계사등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102조의 3⁶⁾ 및 제88조⁷⁾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하거나

-
- 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 6) 「**보험업법**」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 7)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다만, 이는 보험설계사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행위로 보험사기죄의 유죄확정을 받은 자가 새롭게 보험설계사등으로 등록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음⁸⁾.

□ 또한, 보험사기행위 외에 유사수신행위 등 건전한 보험모집에 반하는 법률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보험설계사등으로의 신규 등록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등록한 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임.

○ 최근 금융감독원 검사 과정에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영업을 빌미로 보험계약자에게서 유사수신행위⁹⁾를 통해 자금을 모집한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 8) 다만, 기존에 보험설계사등으로 등록한 자가 보험사기행위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보험설계사등으로 등록할 수 없음.

- 9)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가상 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을 포함한다]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填)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것으로 확인¹⁰⁾된 바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보험사기행위 또는 유사수신행위 등 법률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보험설계사등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법률위반행위자가 보험모집을 지속하거나 신규 보험설계사등으로 등록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보험모집 환경을 조성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금융위원회도 2025년 1월 발표한 「보험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에서 보험설계사등의 금융관계법령 위반 등을 결격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음.

□ 다만, 우리 위원회에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논의 중이므로, 이들을 통합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금융관계법령’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먼저, 개정안과 같이 보험설계사등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형벌 또는 제재조치의 근거 법률을 확대하려는 기존 발의 법률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유사수신헌루 2개 GA에 대한 주요 검사결과(잠정)」, 2025. 3. 24.

안은 총 3건으로, 강준현의원안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유명하의원안 및 박상혁의원안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형법」 제347조(보험사기 한정)를 각각 추가하려는 것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형법」 제347조¹¹⁾에 따른 사기죄 중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법으로, 이 법이 시행¹²⁾되기 전에 기수에 이른 범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¹³⁾.

- 따라서 보험사기행위로 처벌받은 자를 결격사유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외에 「형법」 제347조도 보험사기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하여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개정안은 보험설계사등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형벌 또는 제재조치의 근거 법률을 ‘보험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 근거 법률을 가능한 명확히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개정안과 같이 보험설계사등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형벌 또는 제재조치의 근거 법률을 ‘보험업과

11)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2) 2016. 3. 29. 공포되었고 부칙에 따라 6개월 뒤인 2016. 9. 30.부터 시행

13)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0855 판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 3. 29. 제정되어 2016. 9. 30.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법 시행 전에 보험금을 지급받아 기수에 이른 범행에 대해서는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
--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으로 규정할 경우, 현행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외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형법」 제347조(보험사기 한정)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표 2] 보험설계사등 결격사유 확대 개정안 주요내용 비교

구분	현 행	강준현의원안	유영하의원안 박상혁의원안	김상훈의원안 (개정안)*
보험업법	○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	○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	○	○	○
형법 제347조 (보험사기 한정)	—	—	○	○
유사수신행위법	—	—	—	○

*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으로 규정 예정인 법률 기준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보험설계사등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형벌 또는 제재조치의 근거 법률의 범위를 다른 관련 법안과 종합적으로 논의하되, 이를 명확하기 규정하기 위해서는 ‘금융관계법령’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보다는 위의 법률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2.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

- 개정안은 법인 보험대리점 임원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형벌의 근거 법률을 기존 「보험업법」, 「금융소비자 보호법」에서 보험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함)으로 확대하고, 제척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2).

현 행	개정안
제87조의2(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의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이 되지 못한다.	제87조의2(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①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융관계법령에----- ----- ----- ----- -----5년이-----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¹⁴⁾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라 함)에서 임원의 자격요건¹⁵⁾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법인 보험대리점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법인 보험대리점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에서 별도로 규정¹⁶⁾하고 있음.

1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사.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1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③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6) 「보험업법」 제87조의2(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의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

- 특히, 법인 보험대리점 임원의 형벌과 관련한 결격사유를 보면, 「보험업법」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표 3]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 임원 결격사유(형벌 관련) 비교

보험회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	법인 보험대리점 (「보험업법」 제87조의2제1항)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u>3년</u> 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u>5년</u>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u>3년</u> 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u>5년</u>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u>3년</u> 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와 같은 법인 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기준은 2003년 「보험업법」 전부개정 당시에는 도입되지 않았으나, 이후 법인 보험대리점이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되고,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파급력이 커짐에 따라 2010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것임.

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이 되지 못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은 법인 보험대리점 임원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형벌의 근거 법률을 기존 「보험업법」, 「금융소비자 보호법」에서 보험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으로 확대하고, 제척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법인 보험대리점 임원에 대해서도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 임원에 적용되는 자격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취지임.

○ 국내 보험시장은 보험상품을 개발·제작하는 보험회사와 이를 판매하는 채널이 분리되는 제판분리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 중 법인 보험대리점(GA)의 소속 보험설계사 및 판매비중이 높은 상태임.

- 2024년말 기준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는 약 29만명으로 전체 보험설계사의 44.3%가 보험대리점에 소속되어 있으며,

[표 4] 보험설계사 소속 현황

(단위: 수, 명, %)

구분	'23년말			'24년말			증감 (c=b-a)	증감률 (c/a)
	기관수	인원수(a) (비중)		기관수	인원수(b) (비중)			
보험회사	35	162,590	26.9	34	184,468	28.3	21,878	13.5
보험대리점(GA 등)	29,859	263,321	43.6	29,540	288,446	44.3	25,125	9.5
보험중개사	165	1,272	0.2	170	1,452	0.2	180	14.2
금융기관대리점	1,237	176,791	29.3	1,237	176,890	27.2	99	0.1
합계	31,298	603,974	100.0	30,982	651,256	100.0	47,282	7.8

(자료: 금융감독원)

- 채널별 판매비중은 GA가 전체의 35.7%, 방카슈랑스¹⁷⁾ 15.3%, 기타 (개인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 49.0%를 차지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국내 보험시장의 제판분리현상 확대에 따라 법인 보험대리점의 건전한 운영과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임원의 자격기준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상향하여 지배구조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자에 대해서도 다른 금융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지 여부 및 법인 보험중개사 임원에 대해서도 통일적으로 규정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먼저, 개정안은 「보험업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자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법인 보험대리점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자에 대해서는 기존 3년의 제척기간에 대해 별도로 개정하고 있지 않음.

17)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등 금융기관이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로 등록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보험업법」 제91조 등)

[표 5] 법인 보험대리점 임원 자격기준 관련 현행 규정과 개정안 비교

현행	개정안	[참고] 보험회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u>3년</u> 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u>5년</u>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u>3년</u> 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u>5년</u>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u>5년</u>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인 보험대리점 임원에 대해 보험회사 등 다른 금융회사 임원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요구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할 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자에 대한 제척기간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현행 「보험업법」 제89조의2에서는 법인 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에 대해서도 법인 보험대리점 임원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은 2010년 「보험업법」 개정 당시 법인 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기준과 함께 신설된 조항임.

- 등록 보험중개사는 2024년 3월말 기준 총 170개로, 최근 일반 손해 보험을 중심으로 시장규모가 확대¹⁸⁾되고 있는 상황임.
- 금융위원회도 대형 법인보험중개사에 대한 내부통제업무 지침 마련, 준법감시인 선임 등을 의무화하고, 경영현황 등에 대한 정기보고서를 신설하는 등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보험중개사에 대해서도 보험대리점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마련하기로 발표¹⁹⁾한 바 있음.
- 따라서, 법인 보험중개사 임원에 대해서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부합하도록 법인 보험대리점 임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8) 2021년 3,113억원 → 2022년 3,668억원 → 2023년 4,229억원 (금융위원회, 보험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 2025. 1. 21. 참조)

19) 금융위원회, 보험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 2025. 1. 21. 참조

3. 보험대리점에 대한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도입

-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보험대리점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 중 소속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고, 그 보험설계사의 생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6조).

현 행	개정안
제196조(과징금) ① ~ ③ (생략)	제196조(과징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금융위원회는 제88조제2항에 따라 보험대리점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소속된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고 그 보험설계사의 생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업무정지기간 동안 얻을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은행법」 제65조의4부터 제65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4항까지의----- ----- ----- ----- --.

□ 현행 「보험업법」 제88조제2항은 금융위원회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보험대리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 사유²⁰⁾로는 ① 모집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보험사기행위²¹⁾를 한 경우, ③ 금융위원회의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④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소속 보험설계사가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규정되어 있음.

□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위와 같은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과

20) 「보험업법」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해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1) 「보험업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이란 업무 또는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공익을 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업무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기 위한 과징금을 대체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함.

○ 현행 금융관련 법령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²²⁾, 「여신전문금융업법」²³⁾, 「전자금융거래법」²⁴⁾ 등에서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 법인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중 일부가 모집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보험대리점의 업무가 일정 기간 정지될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에 소속되었으나 해당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선량한 보험설계사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제420조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업무정지기간의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과징금)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대신에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4)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과징금)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법인 보험대리점의 대형화에 따라 500인 이상의 보험설계사를 둔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은 74개, 소속 보험설계사는 약 22만 7,000명 수준²⁵⁾임.
- 참고로, 지난 5년 간 「보험업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보험대리점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수는 15건으로, 이 중 소속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3건임.

[표 5] 최근 5년간 보험대리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현황

대리점명	조치요구일	조치내역	제재사유	소속 설계사
A	'19-06-20	업무정지 60일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개인대리점
B	'19-06-20	업무정지 30일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2
C	'19-06-20	업무정지 30일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68
D	'20-01-31	업무정지 60일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77
E	'20-01-31	업무정지 90일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2
F	'20-07-29	업무정지 60일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5,935
G	'20-02-12	업무정지 90일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5
H	'21-01-15	업무정지 30일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개인대리점
I	'21-04-08	업무정지 90일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4
J	'21-06-15	업무정지 30일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110
K	'21-07-07	업무정지 30일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등	10,891
L	'21-12-17	업무정지 30일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등	700
M	'22-06-17	업무정지 30일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3
N	'23-04-28	업무정지 90일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10
O	'23-08-30	업무정지 30일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개인대리점

(자료: 금융위원회)

25) 2024년 12월말 기준, 법인보험대리점 통합공시조회 기준

○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일부 보험설계사가 모집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보험대리점 전체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외의 소속 보험설계사는 보험모집을 할 수 없어 이들에게 과도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개정안과 같이 업무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의 업무는 유지하되 이로 인한 이득을 과징금으로 징수함으로써 선량한 소속 보험설계사의 과도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가능 요건, 보험중개사에 대한 적용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먼저,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요건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①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② 소속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고, ③ 그 보험설계사의 생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소속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을 것을 요구할 경우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앞선 [표 5]의 제재사유를 보면, 보험대리점에 대한 업무정지 사유의 대부분은 소속 보험설계사 중 일부가 모집에 관한 규정을 위반

하여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경우 기존의 업무정지 사유와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업무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가 불가능한 상황임.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의 부과 요건 중 ‘소속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을 것’을 삭제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앞선 ‘법인 보험중개사 임원에 대해 법인 보험대리점 임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²⁶⁾와 동일하게, 보험중개사에 대해서도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근거를 도입할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26) 16p 참조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준현위원)

- “위원회 대안” 마련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대안반영폐기).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